

韓國의 離婚率 變動에 關한 社會·人口學的 變因考察

卞 化 順

(韓國女性開發院)

- (目 次) -	
I. 序 論	V. 裁判離婚 請求者
II. 韓國의 離婚率 變動	VI. 裁判離婚 請求者의 社會·人口學的 變數들
III. 地域別 離婚率	
IV. 離婚의 法律的 두가지 類型	VII. 結 論

I. 序 論

個人的 감정보다는 集團의 질서를 중요시하는 家族의 制度的인 성격은 傳統的 家族에서 더 잘 나타난다. 李朝 時代의 家族은 원칙적으로 夫婦間의 감정갈등으로 인한 離婚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家族의 안녕과 번영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刑法에 七去之惡이라는 口實하에 女性이 일방적으로 離婚을 당하였다. 이와 더불어 三不去에 의해 離婚을 허락하지 않는 理由가 있었지만, 이 기준은 女性이 媵宅에서 며느리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內容으로서 실제로 이 義務를 수행했을 때는 大家族에서 女性이 어느정도 地位를 굳혔을 時期이므로 離婚을 당할 염려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離婚은 女性에게 있어서는 刑罰이었다. 주위 사람들, 家族 및 親戚들은 그녀를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집안에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庶民階級에서는 夫婦間에 헤어지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관습이 있었다. 서로 같이 살기 어려운 事情이 있으면 그 事情을 탁 털어 놓고 얘기하여 조용히 헤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事情罷議라고 하는 것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協議離婚에 해당하는 것이다¹⁾.

傳統社會의 家族에서는 女性이 離婚을 당했다 하더라도 가족의 機能은 시어머니 혹은 다른 女人들(후처나 둘째 며느리)에 의해서 계속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婦人을 제외하고는 家族解體에 의한 심각한 문제나 子女養育에 관한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현대의 家族의 類型은 무엇보다도 家族構成員間의 정서적 결속관계를 중요시하는 核家族이 支配的이다. 핵가족에서는 家族關係를 결속시킬 끈으로서 정서적인 만족과 夫婦間의 사랑을 강조한다. 이러한 理念은 가정내에서 夫婦사이의 비교적 平等的한 關係를 수반하며, 역할 수행에 대한 엄격한 區分을 없애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愛情이 식으면 가족관계는 파탄되어 夫婦 뿐만 아니라 子女에게 심각한 問題를 야기시킨다. 家族의 構造的인 變化는 사회적 관습의 변화를 가져오고, 예고하며, 또한 強調하면서 結婚 및 家族의 사회적인 태도와 표상을 변화시킨다. 夫婦 사이의 理解關係에서 서로에게 대한 期待가 어긋나거나 아니면 結合을 참을 수 없으면 그들은 別居의 권리를 要求하기도 한다.

1) 정요섭, "이조시대에 있어서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 이조여성연구,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1976, 184쪽

離婚에 관한 사람들의 態度變化도 역시 注目할만하다. 이제는 離婚하는 여성을 덜 비난하며 自身도 失敗라는 생각이나 罪意識에서 벗어나고 있다. 離婚은 더 이상 結婚의 反對概念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夫婦關係의 해결방법의 하나로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家族이 해체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중에서 가장 심각한 問題는 婦人의 精神的, 經濟的 次元에서의 독립적인 생활과 子女養育에 관한 점이다. 뉘케임(E. Durkheim)은 家族概念의 변화에 대한 성찰후에 離婚의 否定的인 측면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離婚은 個人的 病을 고친다는 口實아래 사실상 不吉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것은 夫婦 및 子女들이 타격을 받는 심각한 社會的 病理現象을 이룰 것이다”²⁾.

왜 社會가 産業化됨에 따라 離婚率은 增加할까? 社會·人口學的인 측면에서는 여성의 經濟活動參與의 증가와 出産率의 감소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社會·心理學的으로는 여성의 教育과 就業機會의 증대로 인한 自我意識의 향상으로 인해 家族內에서 여성이 不當한 대우를 받을 경우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으려 하고, 社會構造의 측면에서는 核家族에서 夫婦間의 애정이 식으면 그만큼 不安定한 요소를 포함하여 파탄의 可能性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離婚에 관한 研究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가지 側面에서 다루어 볼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社會·人口學的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離婚의 傾向과 原因들에 관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II. 韓國의 離婚率 變動

1915年 이후의 우리나라의 離婚率을 分析해 볼 때³⁾, 그것은 20世紀 初에는 비교적 높은 離婚率을 보이고 있지만, 그 후에는 점차로 減少現象을 나타내고 있다⁴⁾. 그러나 1949年 이후 오름세를 보이거나 다시 계속 減少하였는데, 최근 1965年 부터는 그 增加率은 현저하게 높아 졌다 (表1 參照).

우리나라의 離婚率에 관한 變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段階로 구분된다.

1. 1911年 부터 1938年 사이 : 韓·日合邦 직후 비교적 높은 離婚率을 보이다가 약간의 변동을 同伴하면서 천천히 漸次적으로 減少하는 時期. 이 시기의 離婚率은 1949-1965年 사이의 離婚率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949年 이후는 大韓民國의 資料만을 다루었으므로 두 時期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 시기의 정확한 離婚의 原因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것은 社會的, 法律的인 급격한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日本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韓國은 西歐 및 日本의 새로운 文明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上流 知識層의 家族構造를 흔들어 놓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新文明을 배운 사람들이 父母가 定해준 配偶者와 애정이 없이 계속 사는 것을 더 이상 참고 살지 못하고 離婚을 請求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⁵⁾.

2. 1945年 解放 이후 南·北韓으로 갈라지고 1950年의 6.25戰爭 때문에 혼란의 時期가 시작

2) E. Durkheim, “Le Divorce par Consentement Mutuel”, (相互協議에 의한 離婚) in *Textes*, 2, *Religion, Morale, Anomie*, Paris, Les Editions de Mimit, 1975, 181쪽

3) 부인의 재판이혼 청구권과 협의이혼이 처음으로 인정된 것은 1915년 한·일합방 이후 부터이다. 그때 부터 일본의 민법이 한국에 적용되었다.

4) 이혼율이라 함은 그해에 결혼한 부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혼 수를 나눈 것과 인구 1,000명에 대한 이혼수를 비율로 한 두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글에서는 前者를 택하려 한다. 왜냐하면 이혼이란 반드시 결혼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율, 결혼율, 사망율과 같이 전 인구수에 의해 나누지 않고, 결혼수에 따라 변할수 있는 상대적인 현상이다. 이경우 동거나 별거의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가족해체현상과 통계적인 이혼율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가족해체현상중 일부분으로서 법률에 의한 혼인신고의 해소가 그 기본적인 전제이다.

5) 이태영, 한국의 이혼율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1, 10쪽

Table 1. Evolution of the Divorce Rate since 1915^{N.1)}
全國의 離婚率 變動

Year	Number of the total population (unit: 1,000)	Number of marriages	Number of divorces	The rate of marriages (%) (a)	Divorce rate (%) (b)	Divorce rate (%) (c)
1915	15,958	111,443	7,995	6.98	0.50	7.2
1920	17,264	138,505	7,982	8.02	0.46	5.8
1925	19,020	186,710	7,607	9.82	0.40	4.1
1930	20,438	180,833	8,894	8.85	0.44	4.9
1935	22,208	135,143	5,323	6.09	0.24	3.9
1938	21,951	158,271	8,151	7.21	0.37	5.2
1945 ^{N.2), Di.1)}						
1949 ^{Di.2)}	20,167	85,043	3,223	4.22	0.16	3.8
1955	21,502	127,489	5,825	5.93	0.27	4.6
1960	24,989	186,187	7,016	7.45	0.28	3.8
1965	28,670	259,081	8,150	9.04	0.28	3.1
1970	31,458	413,241	21,018	13.14	0.67	5.1
1975	35,341	432,685	23,326	12.24	0.66	5.4
1980	37,417	550,753	43,529	14.72	1.16	7.9

Source: *Annual Report of the Statistics of Justice 1967-1981*, Ministry of the Justice.

Vital Statistics, EPB. recite of the Divorce Rate in Korea, Tae-Yong Li, Seoul Institute of the Consultation on the Family Law in Korea.

- a) 전인구수에 대한 결혼수
- b) 전인구수에 대한 이혼수
- c) 결혼수에 대한 이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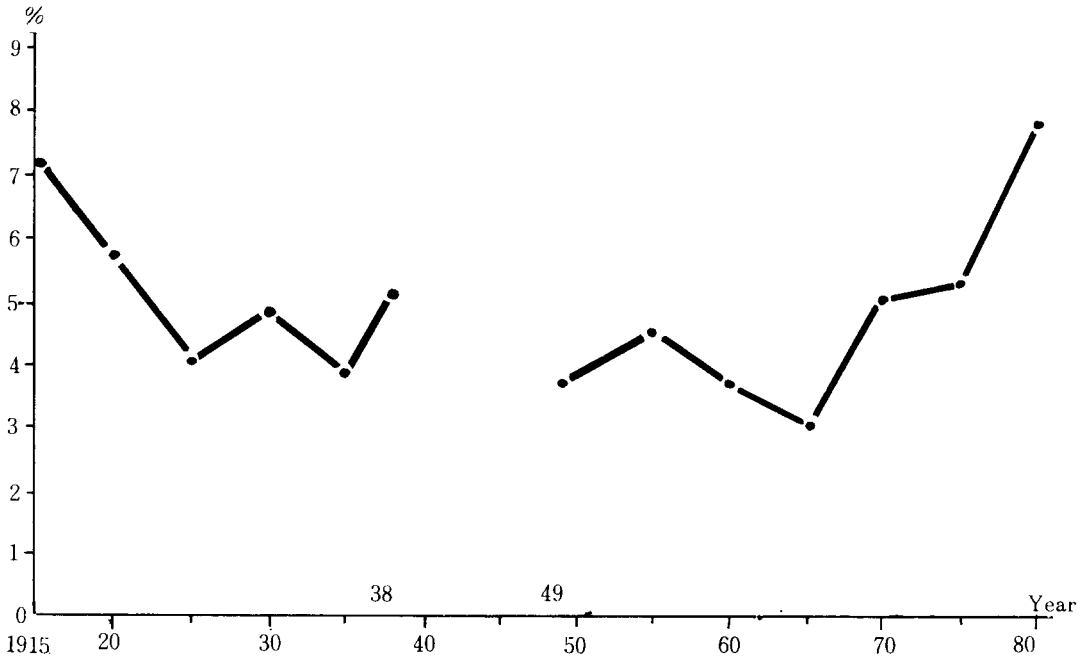
되었다. 이 期間 동안에는 離婚 및 結婚의 數는 급격하게 줄지만, 戰爭 직후 급격한 增加는 혼란시기로 인한 실제적 同居 및 別居의 현상이 結婚 및 離婚의 신고로 직접적으로 聯關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 離婚率은 1965年 이후 점점 增加하고 있으며, 75年 이후 부터는 현저한 上昇率을 보이고 있다. 이후 부터 우리는 “現代的”인 의미의 離婚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

다⁶⁾. 1960年代에는 結婚 26雙 끝에 한雙이 離婚으로 성립되었던 것이 '80年代에는 結婚 12雙 끝에 한雙으로 離婚이 發生하였다. 20年 사이에 離婚率이 두배 이상으로 增加한 것이다. 이 離婚率의 增加는 夫婦關係 유형이 變化에서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다. 都市化는 필연적으로 個人主義와 女性들로 하여금 自我意識을 강하게 느끼게 하여 그들이 不利한 상황에 處해 있을 때 더이상 참지않고 離婚을 請求하는 경향을 장려

6) “現代的”의 의미의 이혼이란 이혼의 원인이 “부정, 유기, 배우자 및 그의 직계존속의 학대 및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학대, 행방불명”(민법 840조, 제1~5항)과 같이 배우자의 유책에 의한 재판청구 보다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부부간의 성격 불일치, 신의의 중혼, 배우자의 범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적불능 등이 원인이 된 이혼을 의미한다. 부부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편의 잘못은 없더라도 심각하여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이런 경우 혼인생활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Fig.1. Evolution of the Divorce Rate since 1915 Sum of the Divorces reduced for 100 Marriages
全國의 離婚率 變動



Source : table 1.

- N. 1) 그 해에 나타나 있는 결혼의 수는 그전 5년동안의 결혼수의 평균이다. 반면 이혼의 수는 그해의 수치이다. (왜냐하면 각 해마다 결혼수가 불규칙하므로 평균 결혼 5년 이내에 이혼을 한다는 가정하에 규칙적인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 N. 2) 1945년 이후 모든 수치는 대한민국의 것이다.
- Di. 1) 1939-45년도의 결혼과 이혼의 총수는 전쟁동안에 소멸되었다.
- Di. 2) 1950년도의 이혼수는 전쟁때문에 자료가없었다. 그래서 이 수치는 1946-1949년의 것으로 대체되었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結婚生活의 실패는 적어도 한번쯤은 離婚을 생각하게끔 한다.

Ⅲ. 地域別 離婚率⁷⁾

1960年 부터 1970年 以前까지 離婚率이 비교적 안정된 時期에 우리는 濟州道를 제외하고는 각 地域間에 離婚率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離婚의 절대적인 數值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人口 1,000名에 대한 離婚率은 다른 地域과 비슷하게 나타났다(表2 參照).

濟州道는 다른 地域과 비교해서 항상 離婚率이 높다. 그것은 그 地域의 社會·經濟的 要因과 地形的인 條件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곳에서는 대부분의 女性이 바다에서 海女로 일하고 있으며, 反面 많은 男性들은 農事를 짓거나 아이를 돌보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陸地로 떠날 意思를 가지고 있지 않다. 濟州道 女性들의 氣質

7) 지역별 이혼율은 전 인구의 일반적인 이혼율에 대한 연구에서와는 달리 결혼수와 비교해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전 인구의 수와 비교해서 계산된 도표를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따른 결혼 수와 비교한 이혼율을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8) 조혜정,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인문과학, 연세대학교, 1980, 143-168쪽

Table 2. Divorce Rate by the Judgment of the District Court^{N.3)}

全國 各 地方法院 管轄別 離婚率

(Unit : 1,000)

Region		1960	1965	1970	1976
Seoul	Nb. of the total pop.	5,234	12,316	8,883	11,405
	Nb. of divorces	1,601	2,423	6,789	7,904
	Divorce Rate ^{N.4)}	0.3	0.2	0.76	0.69
Chun-Chon	Nb. of the total pop.	1,597	1,706	1,867	1,842
	Nb. of divorces	393	374	778	1,356
	Divorce Rate	0.2	0.2	0.42	0.74
Choung-Ju	Nb. of the total pop.	1,370	1,537	1,481	1,513
	Nb. of divorces	502	342	1,092	1,283
	Divorce Rate	0.4	0.2	0.74	0.85
Dae-Jun	Nb. of the total pop.	2,528	2,777	2,861	2,961
	Nb. of divorces	721	570	1,611	2,388
	Divorce Rate	0.3	0.2	0.56	0.80
Bu-San	Nb. of the total pop.	4,182	4,648	5,000	5,850
	Nb. of divorces	1,307	1,721	3,946	4,956
	Divorce Rate	0.3	0.4	0.79	0.85
Gwang-Ju	Nb. of the total pop.	3,553	4,013	4,006	4,002
	Nb. of divorces	851	796	2,488	2,791
	Divorce Rate	0.2	0.2	0.62	0.70
Joun-Ju	Nb. of the total pop.	2,507	2,639	2,435	2,445
	Nb. of divorces	630	598	1,331	1,875
	Divorce Rate	0.3	0.2	0.55	0.77
Jae-Ju	Nb. of the total pop.	282	326	366	421
	Nb. of divorces	194	221	315	543
	Divorce Rate	0.7	0.7	0.86	1.29
Dae-Ku	Nb. of the total pop.	3,848	4,480	4,558	4,902
	Nb. of divorces	817	1,105	2,668	3,103
	Divorce Rate	0.2	0.2	0.59	0.63
Total	Nb. of the total pop.	25,101	34,443 ^{Di.3)}	31,458	36,014
	Nb. of divorces				
	Divorce Rate	0.3	0.2	0.67	0.74

Source : *Annual Report of the Statistics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recite of Divorce Rate in Korea*, Tae-Young Li, *Ib. id.*, 19-20쪽

N.3) 이 수치들은 각 도에 위치한 지방법원의 것들이다.

N.4) 각 도의 전 인구수에 대한 이혼율이다(%).

Di.3) 도표 1과 2사이에 1965년 전 인구조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서울의 전인구수를 옮겨적는 데서 나온 실수이다

은 독립심과 책임감이 강하며, 經濟力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男性이 주관하는 祭祀는 친척관계에서 主役割을 하고 있다. 家庭에서 家父長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儒敎의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現實과의 乖離는 家庭生活에서 갈등을 야기시킨다.

1970年代 이후 離婚率의 變動은 각 地域마다 매우 다른 樣相을 보이며 增加하고 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離婚率이 낮았던 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 더 높은 離婚率의 增加現象을 보이고

있다.

1960~76年 사이에 春川, 大邱, 光州는 離婚率이 3배나 增加한 반면, 濟州는 2배가 못되는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IV. 離婚의 法律的 두가지 類型

表3은 1960年 부터 1982年 사이의 法律上的 類型에 따른 離婚의 數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離婚은 協議離婚으로 나타났는데, 이 比率

Table 3. The Two Types of Divorces According to the Law
法律에 根據한 離婚의 두가지 類型

Year	Divorce by agreement	Divorce by judgement	Total
1960	9,164 (97.0)	288 (3.0)	9,482 (100.0)
1961	16,039 (97.8)	324 (2.2)	16,363 (100.0)
1962	12,748 (95.9)	545 (4.1)	13,293 (100.0)
1963	14,655 (97.1)	429 (2.9)	15,084 (100.0)
1964	13,691 (96.6)	446 (3.4)	14,137 (100.0)
1965	11,623 (94.7)	649 (5.3)	12,272 (100.0)
1966	12,170 (93.9)	787 (6.1)	12,957 (100.0)
1967	13,658 (94.4)	806 (5.6)	14,464 (100.0)
1968	14,751 (94.5)	855 (5.5)	15,606 (100.0)
1969	20,448 (95.0)	1,083 (5.0)	21,531 (100.0)
1970	19,720 (93.8)	1,298 (6.2)	21,018 (100.0)
1971	22,936 (95.0)	1,213 (5.0)	24,149 (100.0)
1972	20,781 (94.2)	1,281 (5.8)	22,062 (100.0)
1973	17,570 (93.0)	1,325 (7.0)	18,895 (100.0)
1974	27,156 (92.2)	2,287 (7.8)	29,443 (100.0)
1975	21,553 (92.4)	1,773 (7.6)	23,326 (100.0)
1976	23,894 (91.2)	2,305 (8.8)	26,199 (100.0)
1977	26,861 (91.9)	2,372 (8.1)	29,233 (100.0)
1978	37,164 (91.4)	3,477 (8.6)	40,641 (100.0)
1979	24,871 (86.0)	4,060 (14.0)	28,931 (100.0)
1980	37,020 (85.0)	6,509 (15.0)	43,529 (100.0)
1981	43,692 (84.6)	7,669 (15.4)	51,661 (100.0)
1982	46,868 (82.5)	9,942 (17.5)	56,810 (100.0)

Source : Annual Report of the Statistics of Justice, Ministry of the Justice.

Li.1) 1960에서 1966년 사이의 전 이혼 수는 표 1의 것과 틀리다(통계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N.4) 1963년부터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에 포함된다. 이혼에 관한 통계자료로는 인구동태통계

(경제기획원)과 법원통계연보(법원행처)두가지가 있다. 이 둘중에서 나는 법원통계연보를 사용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혼청구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요인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국적인 통계자료 이므로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다.

은 1961년에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 점점 낮아지고 있다(82.5%, 1982년). 1960년에서 '69년 사이의 裁判離婚의 比率은 단지 2포인트(3.0%에서 5.0%)增加한 반면, '70년에서 '79년 사이에는 7.8포인트(6.2%에서 14.0%)가 增加하였다. 裁判離婚의 증가현상은 최근에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1982년 17.5%).

대부분의 離婚이 協議離婚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夫婦가 이혼을 할 意思가 서로 동등하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男便이 婦人에게 협박으로 혹은 속임수를 통해서 離婚을 강요하는 것을 흔히 보아왔다. 反面에 女性들은 男便이 離婚을 거부할 때는 家庭法院에 請求하는 法律의 가능성에 힘을 빌렸을 것으로 생각된다⁹⁾. 그러므로 裁判離婚 請求 비율의 증가는 配偶者 중의 한편에 의해 거절당한 이혼을 法廷에 호소하는 숫자의 增加로 解釋될 수 있다.

V. 裁判離婚의 請求者

전반적으로 볼 때, 離婚請求의 比率은 女性에게서 보다는 男性에게서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表4 參照). '70년대 初 부터 '80년대 까지 男性의 離婚請求는 전체 이혼청구자의 과반수를 약간 넘었다(단, 1974, 1975년은 제외).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女性의 離婚請求率은 과반수를 넘기도 하고, 혹은 그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다(1981년 52.3%, 1982년 49.2%).

男便 및 婦人의 離婚請求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婦人의 離婚請求에 있어 예전의 慣習은 男便의 마음대로 婦人을 내쫓거나 遺棄를 할 수 있었다. 비록 婦人이 자신의 劣等한 위치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經濟的 및 情緒的 중속성 때문에 男便이 학대, 유기 및 부정행위를 이유로 別居를 주장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의 女性의 離婚請求率의 증가현상은 自身の 거북스러운 生活을 意識한 결과 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解釋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女

Table 4. Demandant on the Divorce by Judgement^{N.5)}
裁判離婚請求者

Year	Male	Female	Total
1971	2,395 (55.4)	1,927 (44.6)	4,322 (100.0)
1972	2,331 (51.1)	2,232 (48.9)	4,563 (100.0)
1973	2,573 (52.1)	2,364 (47.9)	4,937 (100.0)
1974	2,568 (48.0)	2,783 (52.0)	5,351 (100.0)
1975	2,880 (48.5)	3,063 (51.5)	5,943 (100.0)
1976	4,059 (53.9)	3,470 (46.1)	7,529 (100.0)
1977	4,144 (53.1)	3,654 (46.9)	7,798 (100.0)
1978	4,330 (51.8)	4,035 (49.2)	8,365 (100.0)
1979	5,348 (52.0)	4,943 (48.0)	10,291 (100.0)
1980	5,787 (52.2)	5,299 (47.8)	11,086 (100.0)
1981	6,316 (47.7)	6,919 (52.3)	13,235 (100.0)
1982	6,463 (50.8)	6,267 (49.2)	12,730 (100.0)

Source: Annual Report of the Statistics of Justice, Ministry of the Justice.

N.5) 이표부터 이혼의 총수는 알의 것과는 틀리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수치는 실제로 이혼이 확정된 수보다 더 많은데 이것은 이혼청구자의 수이기 때문이다.

9) 이태영, 한국의 이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68,

性들이 自身の 상황이 不利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女性의 離婚請求率이 지난 10여년 동안 크게 增加하지 않는 것은(4.6포인트) 離婚의 原因이 크게 變하지 않은 것을 볼 때¹⁰⁾, 夫婦의 갈등유형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解釋된다.

둘째로, 男便의 離婚請求에 대한 경향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여전히 女性은 離婚후에도 不利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婦人은 男便이 離婚을 요구 할지라도 허락하지 않는다. 離婚請求者의 半數 이상이 男性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理由때문인 것으로 說明된다.

VI. 裁判離婚 請求者의 社會·人口學的 變數들¹²⁾

1. 結婚期間

結婚期間에 따른 離婚의 상황을 관찰해 보면(表 5), 結婚 3~4年 以内に 離婚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971年 71.1%, 1980年 70.8%), 이것은 結婚初期에 離婚의 갈등이甚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離婚 請求者의 4분의 1이 결혼 3~4年만에 이루어지고, 거의 5분의 1이 결혼 2年만에 離婚 請求를 하고 있다. 이 경향은 최근 10年間 큰 變動이 없었다. 離婚의 절대적 數는 12年 동안에 3배나 증가한 반면에 結婚期間에 따른 離婚의 分布 변동은 거의 變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 2년이 채 못된 離婚의 比率이 약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1971年の 23.9%에서 1982년에 21.8%). 또한 같은 시기에 결혼 2~4年 후의 離婚이 약간 增加하였다(47.2%에서 49.0%). 그러나 위의 낮은 증가율은 結婚期間에 따른 離婚의 변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한편 결혼한지

10年 이후에의 離婚도 무시할 수 없을만한 量으로 나타났다(10.4%, 1982년).

흔히 우리는 離婚率이 가장 높은 時期는 結婚 후 3年에 일어난다고 한다. 이 資料(表 5) 역시 結婚 3~4年 후의 離婚이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 3年 혹은 5年 만의 危機”후에 離婚請求量은 줄어든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 夫婦는 다시 夫婦生活에 定着한다는 것을 立證해 주는 것이다.

2. 離婚年齡

전체적으로 볼 때, 離婚請求時의 年齡은 男子들의 경우는 30~39歲, 女子의 경우는 20~29歲의 集團에서 가장 많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6). 20歲 미만의 離婚率의 변화는 실제로 結婚한 夫婦의 數가 적기 때문에 그 比率은 가장 적다. 그러나 20~29歲의 男·女 모두에게서 離婚의 변동율은 1971年에서 1982年 사이에 매우 현저하게 增加하였고, 반면에 50歲 이상의 請求者의 比率은 줄어들었다. 離婚年齡의 早期現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 時期의 全人口의 平均結婚年齡의 변동을 보면, 男子의 경우 1970年の 27.1歲에서 1980年の 27.3歲로 거의 變하지 않았으나, 女子의 경우는 1970年の 23.3歲에서 1980년에는 24.1歲로 平均結婚年齡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表 7 參照).

平均結婚年齡과 離婚請求時의 夫婦의 결혼기간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20歲에서 39歲 사이에 離婚의 數가 最大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타당하다.

30歲가 넘는 男性들의 離婚率은 같은 나이의 女性들 보다 더 높았다. 반면에, 30歲 미만의 女性들은 男性들 보다 離婚率이 더 높게 나타났다. 男性에게 있어서 離婚은 年齡과 관계되

10) 이 현상은 “이혼의 원인들”에 관한 분석에서 자세히 연구할 것이다.

11) 이장성, “우리나라 이혼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혼실태분석과 제도적 모순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76, 88쪽.

12) 우리는 협의이혼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별도로 구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이혼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전국적인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재판이혼자의 특성 밖에는 분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에 관한 질적 및 양적 조사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Table 5. Distribution of the Divorces by the Time of Marriage
結婚期間에 따른 離婚者의 分布

Year	Less than 1 year	1 year	2 year	3 - 4 year	5 - 9 year	More than 10 years	Total
1971	346 (8.0)	686 (15.9)	945 (21.9)	1,095 (25.3)	841 (19.5)	409 (9.4)	4,322 (100.0)
1972	421 (9.2)	680 (14.9)	946 (20.7)	1,139 (25.0)	751 (16.5)	626 (13.7)	4,563 (100.0)
1973	376 (7.6)	699 (14.2)	1,110 (22.5)	1,359 (27.5)	970 (19.6)	23 (8.6)	4,937 (100.0)
1974	477 (8.9)	804 (15.0)	1,183 (22.1)	1,434 (26.8)	975 (18.2)	478 (9.0)	5,351 (100.0)
1975	469 (9.9)	933 (15.7)	1,260 (21.2)	1,651 (27.8)	1,134 (19.1)	496 (8.3)	5,943 (100.0)
1976	523 (6.9)	1,388 (18.4)	1,635 (21.7)	1,899 (25.2)	1,465 (19.5)	619 (8.3)	7,529 (100.0)
1977	493 (6.3)	1,214 (15.6)	1,771 (22.7)	2,003 (25.7)	1,679 (21.5)	638 (8.2)	7,798 (100.0)
1978	623 (7.4)	1,228 (14.7)	1,625 (19.4)	2,061 (24.6)	1,982 (23.7)	846 (10.2)	8,365 (100.0)
1979	807 (7.8)	1,478 (14.4)	1,987 (19.3)	2,541 (24.8)	2,498 (24.3)	971 (9.4)	10,291 (100.0)
1980	864 (7.8)	1,422 (12.8)	2,513 (22.7)	3,273 (29.5)	2,112 (19.1)	902 (8.1)	11,086 (100.0)
1981	946 (7.2)	1,752 (13.2)	3,137 (23.7)	3,989 (30.1)	2,451 (18.5)	960 (7.3)	13,235 (100.0)
1982	873 (6.9)	1,889 (14.9)	2,890 (22.7)	3,352 (26.3)	2,369 (18.8)	1,320 (10.4)	12,730 (100.0)

Source : Annual Report of Statistics of Justice, Ministry of the Justice.

지 않지만 女性은 젊을 때에 離婚을 하는 경향이 높다.

3. 子女의 數

1975年의 離婚請求 夫婦의 平均子女數는 2.41名이다(表 8 參照). 이혼청구중에 있는 夫婦의 子女數가 전체 家口當 平均子女數(같은 해에 2.44名)보다 적은 것은 당연하다(表 9 參照). 그렇지만 離婚請求者의 결혼기간은 총가구의 결혼

기간 보다 짧기 때문에 이 미약한 差異는 의미가 거의 없다.¹³⁾

離婚請求者의 지난 12年 동안의 平均子女數는 減少하였다(2.48名에서 2名). 이러한 현상은 1960年 이후 人口增加抑制으로 인한 家族計劃 運動의 결과이기도 하다. 1975年에 離婚을 請求한 夫婦 중에서 적어도 3名의 子女를 가진 夫婦의 比率(61.9%)은 총가구 중 3名의 子女를 가진 夫婦의 比率보다 훨씬 높다(51.5%). 이것

13) L. Roussel은 총가구의 출산율과 이혼 청구자의 출산율에 관한 전체적인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이혼 청구자의 결혼평균기간은 전체 가구에 비교해 볼때 훨씬 더 짧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한 것은 같은 기간일 때이다. L. Roussel, *Le mariage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Paris, P. U. F., INED, Cahier No.73, 1975, 144쪽. 나는 루셀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표 8 과 9를 비교하려한다. 3명의 자녀를 가진 부부들 중에서, 이혼을 청구한 부부의 비율과 총가구의 비율을 비교하려한다.

Table 6. Distribution of the Divorcees by the Age
年齡에 따른 離婚者의 分布

Sex & year	Less than 20 years	20-29	30-39	40-49	More than 50 years	Total
Male						
1971	31 (0.7)	921 (21.3)	1,961 (45.4)	902 (20.9)	507 (11.7)	4,322 (100.0)
1972	123 (2.7)	1,052 (23.1)	1,763 (38.6)	1,083 (23.7)	542 (11.9)	4,563 (100.0)
1973	48 (1.0)	990 (20.1)	2,224 (45.0)	1,123 (22.7)	552 (11.2)	4,937 (100.0)
1974	108 (2.0)	1,091 (20.4)	2,312 (43.2)	1,186 (22.2)	654 (12.2)	5,351 (100.0)
1975	115 (1.9)	1,329 (22.4)	2,728 (45.9)	1,340 (22.5)	431 (7.3)	5,943 (100.0)
1976	129 (1.7)	1,979 (26.3)	3,349 (44.5)	1,613 (21.4)	459 (6.1)	7,529 (100.0)
1977	142 (1.8)	2,391 (30.7)	3,510 (45.0)	1,483 (18.4)	317 (4.1)	7,798 (100.0)
1978	90 (1.1)	2,235 (26.7)	3,753 (44.9)	1,772 (21.2)	515 (6.1)	8,365 (100.0)
1979	135 (1.3)	2,724 (26.5)	4,456 (43.3)	2,369 (23.0)	607 (5.9)	10,291 (100.0)
1980	59 (0.6)	3,205 (28.9)	4,969 (44.8)	2,206 (19.9)	647 (5.8)	11,086 (100.0)
1981	73 (0.5)	3,178 (24.0)	6,494 (49.1)	2,752 (20.8)	738 (5.6)	13,235 (100.0)
1982	44 (0.3)	3,765 (29.6)	5,689 (44.7)	2,372 (18.6)	860 (6.8)	12,730 (100.0)
Female						
1971	245 (5.7)	1,627 (37.6)	1,714 (39.7)	519 (12.0)	217 (5.0)	4,322 (100.0)
1972	282 (6.2)	1,773 (38.9)	1,728 (37.9)	559 (12.2)	221 (4.8)	4,563 (100.0)
1973	271 (5.5)	1,921 (38.9)	1,846 (37.4)	639 (12.9)	260 (5.3)	4,937 (100.0)
1974	363 (6.8)	2,103 (39.3)	1,897 (35.4)	695 (13.0)	293 (5.5)	5,351 (100.0)
1975	317 (5.3)	2,721 (45.8)	2,054 (34.6)	689 (11.6)	162 (2.7)	5,943 (100.0)
1976	847 (11.2)	3,410 (45.3)	2,479 (32.9)	710 (9.5)	83 (1.1)	7,529 (100.0)
1977	718 (9.2)	3,286 (42.1)	2,854 (36.6)	823 (10.6)	117 (1.5)	7,798 (100.0)
1978	122 (1.4)	3,562 (42.6)	3,428 (41.0)	1,110 (13.3)	143 (1.7)	8,365 (100.0)
1979	1,271 (12.4)	4,050 (39.4)	3,482 (33.8)	1,268 (12.3)	220 (2.1)	10,291 (100.0)
1980	466 (4.2)	4,938 (44.5)	3,878 (35.0)	1,561 (14.1)	243 (2.2)	11,086 (100.0)
1981	454 (3.4)	5,924 (44.8)	5,345 (40.4)	1,329 (10.0)	183 (1.4)	13,235 (100.0)
1982	466 (3.7)	6,097 (47.9)	4,256 (33.4)	1,539 (12.1)	372 (2.9)	12,730 (100.0)

Source : *Annual Report of Statistics of Justice*, Ministry of the Justice.

Table 7. Mean Age at Marriage of the Total Population.
總人口의 平均 結婚年齡

Year	Husband	Wife
1955	24.5	20.4
1960	25.4	21.6
1966	26.7	22.8
1970	27.1	23.3
1975	27.4	23.6
1980	27.3	24.1

Source : Social Indicators in Korea, E. P. B., 1983

Table 8. Distribution of Divorc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ildrens
子女數에 따른 離婚者의 分布

Year	0	1	2	3 - 4	5 +	Total
1971	625 (14.5)	950 (22.0)	1,071 (24.8)	970 (22.4)	706 (16.3)	4,322 (100.0)
1972	789 (17.3)	976 (21.4)	1,034 (22.7)	1,045 (22.9)	719 (15.7)	4,563 (100.0)
1973	673 (13.6)	1,151 (23.3)	1,242 (25.2)	1,135 (23.0)	736 (14.9)	4,937 (100.0)
1974	741 (13.8)	1,277 (23.9)	1,358 (25.4)	1,260 (23.5)	715 (13.4)	5,351 (100.0)
1975	823 (13.8)	1,368 (23.0)	1,492 (25.1)	1,444 (24.3)	816 (13.8)	5,943 (100.0)
1976	633 (8.4)	1,636 (21.7)	2,386 (31.7)	1,853 (24.6)	1,021 (13.6)	7,529 (100.0)
1977	527 (6.8)	1,806 (23.2)	2,427 (31.1)	2,081 (26.7)	952 (12.2)	7,798 (100.0)
1978	666 (8.0)	1,836 (21.9)	2,835 (33.9)	2,218 (26.5)	810 (9.7)	8,365 (100.0)
1979	801 (7.8)	2,300 (22.3)	3,332 (32.4)	2,881 (28.0)	977 (9.5)	10,291 (100.0)
1980	1,136 (10.2)	2,682 (24.2)	3,636 (32.8)	2,834 (25.6)	798 (7.2)	11,086 (100.0)
1981	1,385 (10.5)	2,707 (20.5)	4,809 (36.3)	3,637 (27.5)	697 (5.2)	13,235 (100.0)
1982	1,624 (13.0)	3,272 (26.2)	4,273 (34.3)	2,702 (21.7)	602 (4.8)	12,473 (100.0)

Source: Annual Report of Statistics of Justice, Ministry of the Justice.

Table 9. Distribution of Household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ildren in 1975
1975年度 平均子女數에 따른 家口의 分布

(Unit: %)

No. of Children	Seoul	Urban Area	Rural Area	Total
0	23.4	18.6	16.4	17.7
1	17.2	16.1	14.1	15.3
2	20.6	20.4	15.6	18.5
3 - 4	33.1	35.6	36.3	35.8
5 or more	5.7	9.3	17.6	12.7
Total	100.0	100.0	100.0	100.0
Mean No. of Children	2.02	2.28	2.68	2.44

Sour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ome II, 1/1000, EPB

은 子女의 數가 夫婦間의 갈등을 초래하는 要因은 아니지만 子女의 數가 적은 것은 離婚의 결정시 障礙要因이 적어 肯定的인 要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社會·職業의인 範疇

12年 동안 離婚을 請求한 男便과 婦人의 社會, 직업적인 構造를 분석해 보면, 둘 다 農業 종사자, 商業, 事務職 종사자 및 失業者의 數가 가장 많다(表 10 및 表 11 參照).

1971年 부터 '81年 동안의 職業에 따른 離婚率의 變動에 있어서 男便의 경우 농업, 상업, 교직종사자, 군인, 공무원 및 실업자의 比率는 減少한 反面에 전문직, 노동, 고용직 및 사무직종사자의 比率는 增加하였다. 婦人의 경우는 농업, 노동, 고용직, 상업, 교직 종사자 및 공무원은 減少하고, 사무직 및 전문직 종사자와 실업자는 增加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女性의 대부분이 농업종사자이거나, 經濟活動 參加者가 아니기 때문에¹⁴⁾

14) 1974년의 女性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0.6%이었다. 그 중에서 농업종사자는 52.5%이다. 이효재, 김주숙, 한국 女性의 지위, 이화여대 출판부, 1975.

Table 10. Distribution of Divorces of the Male Demandant According to the Socio-professional Category
 男子 離婚請求者の 社會·職業範疇에 따른 分布

Year	Agri. Fishery & Forestry	Laborer	Emple- yee	Sales worker	Soldier	Salaried man	Educator	Admi. & Mana- gerial workers	Prof. & Technical workers	Unem- ployed person	Other	Total
1971	429 (17.9)	152 (6.3)	90 (3.8)	502 (21.0)	68 (2.8)	259 (10.8)	58 (2.4)	81 (3.4)	163 (6.8)	489 (20.4)	104 (4.4)	2,395 (100.0)
1972	511 (20.0)	169 (6.9)	110 (4.5)	439 (18.0)	63 (2.6)	262 (10.8)	73 (3.0)	70 (2.9)	199 (8.2)	447 (19.4)	91 (3.7)	2,434 (100.0)
1973	429 (16.7)	217 (8.4)	108 (4.2)	565 (22.0)	52 (2.0)	273 (10.6)	57 (2.2)	86 (3.3)	193 (7.5)	560 (21.8)	33 (1.3)	2,573 (100.0)
1974	461 (17.3)	215 (8.0)	144 (5.4)	586 (21.9)	56 (2.1)	291 (10.9)	54 (2.0)	95 (3.6)	197 (7.4)	540 (20.2)	33 (1.2)	2,672 (100.0)
1975	467 (16.1)	236 (8.1)	162 (5.6)	590 (20.3)	51 (1.8)	323 (11.1)	59 (2.0)	100 (3.5)	296 (10.2)	574 (19.8)	44 (1.5)	2,902 (100.0)
1976	726 (17.3)	259 (6.2)	200 (4.7)	926 (22.0)	50 (1.2)	576 (13.7)	56 (1.3)	89 (2.1)	353 (8.4)	733 (17.4)	198 (4.7)	4,206 (100.0)
1977	622 (15.3)	322 (7.8)	244 (6.0)	875 (21.5)	73 (1.8)	474 (11.6)	57 (1.4)	126 (3.1)	341 (8.4)	776 (19.1)	163 (4.0)	4,073 (100.0)
1978	653 (15.0)	412 (9.4)	263 (6.0)	670 (15.3)	68 (1.6)	512 (11.7)	66 (1.5)	92 (2.1)	338 (7.7)	842 (19.3)	453 (10.4)	4,369 (100.0)
1979	711 (13.3)	551 700	432 (8.1)	867 (16.2)	69 (1.3)	676 (12.7)	91 (1.7)	102 (1.9)	492 (9.2)	826 (15.4)	531 (9.9)	5,348 (100.0)
1980	828 (14.2)	700 (12.0)	584 (10.1)	915 (15.7)	119 (2.1)	760 (13.2)	109 (1.9)	138 (2.4)	480 (8.2)	828 (14.2)	367 (6.3)	5,828 (100.0)
1981	913 (14.4)	725 (11.5)	567 (9.0)	1,208 (19.1)	119 (1.9)	855 (13.5)	124 (2.0)	159 (2.5)	549 (8.7)	751 (11.9)	346 (5.9)	6,316 (100.0)
1982	1,006 (15.8)	533 (8.4)	310 (4.9)	902 (14.1)	131 (2.0)	819 (12.9)	96 (1.5)	146 (2.3)	311 (4.9)	778 (12.2)	1,334 ^{N.6)} (21.0)	6,366 (100.0)

Source: Annual Report of the Statistics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N.) 우리는 1982년 "Other"의 집단이 갑자기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일년사이의 증가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離婚率을 좀 더 잘 理解하기 위해서는 全人口의 社會·職業적인 범주에 의해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既婚女性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女性의 比率과 離婚을 請求한 女性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女性의 比率을 비교하며(表 12 參照), 표준직업 분류에 의한 既婚 就業女性의 직업의 분포와 離婚을 請求한 女性의 직업 분포를 비교하려고 한다(表 13 參照). 그러나 여기서는 既婚男性의 社會·職業分佈率과 離婚을 청구한 男性의 職業分佈率을 비교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男性

에게는 좋은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家庭에서 좋은 아버지이고 좋은 男便이 될 수 있는 必要條件이기 때문이다. 男性의 職業은 家族生活에서 女性의 職業보다 긴장을 덜 초래한다.

離婚訴訟에 관계된 여성들은 全 人口보다 經濟活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表 12 參照). 離婚을 請求한 女性의 50.8%가 職業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체 既婚女性 中에서는 34.7%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離婚訴訟에 관계된 婦人들의 직업구조의 분포와 職業을 가진 既婚女性의 직업구조의 분포의

Table 11. Distribution of Divorces of the Female Demandant According to the Socio-Professional Category

女子離婚請求者の社會·職業範疇에 따른 分布

Year	Agri. Fishery & Forestry	Laborer	Emple- yee	Sales worker	Soldier	Salaried woman	Educator	Admi. & Manage- rial workers	Prof. & Technical workers	Unem- ployed person	Other	Total
1971	257 (13.3)	65 (3.4)	195 (10.1)	272 (14.1)	-	91 (4.7)	35 (1.8)	31 (1.6)	152 (7.9)	739 (38.4)	90 (4.7)	1,927 (100.0)
1972	215 (10.1)	69 (3.3)	195 (9.2)	281 (13.2)	2 (0.1)	89 (4.2)	41 (1.9)	37 (1.7)	175 (7.2)	931 (43.7)	94 (4.4)	2,129 (100.0)
1973	241 (10.2)	143 (6.1)	220 (9.3)	325 (13.7)	-	132 (5.6)	49 (2.1)	33 (1.4)	177 (7.4)	987 (41.8)	57 (2.4)	2,364 (100.0)
1974	270 (10.1)	149 (5.6)	226 (8.4)	290 (10.8)	-	142 (5.3)	61 (2.3)	43 (1.6)	187 (7.0)	1,251 (46.7)	60 (2.2)	2,679 (100.0)
1975	317 (10.4)	163 (5.4)	238 (7.8)	359 (11.8)	-	132 (4.3)	57 (1.9)	44 (1.4)	187 (6.2)	1,499 (49.3)	45 (1.5)	3,041 (100.0)
1976	353 (10.2)	148 (4.3)	263 (7.6)	370 (10.7)	2 (0.1)	143 (4.1)	60 (1.7)	40 (1.2)	185 (5.4)	1,823 (52.7)	69 (2.0)	3,456 (100.0)
1977	394 (10.9)	138 (3.8)	220 (6.1)	363 (10.1)	2 (0.1)	161 (4.5)	61 (1.7)	27 (0.8)	208 (5.8)	1,911 (53.2)	107 (3.0)	3,592 (100.0)
1978	329 (8.2)	102 (2.6)	324 (8.1)	484 (12.1)	2 (0.1)	88 (2.2)	29 (0.7)	18 (0.5)	238 (6.0)	2,228 (55.8)	154 (3.8)	3,996 (100.0)
1979	399 (8.1)	234 (4.7)	432 (8.7)	571 (11.6)	2 (0.0)	182 (3.7)	38 (0.8)	39 (0.8)	345 (7.0)	2,451 (49.6)	250 (5.0)	4,943 (100.0)
1980	489 (9.3)	258 (4.9)	458 (8.7)	646 (12.3)	2 (0.0)	228 (4.3)	61 (1.2)	53 (1.0)	255 (4.8)	2,588 (49.2)	220 (4.2)	5,258 (100.0)
1981	547 (7.9)	213 (3.1)	320 (4.6)	916 (13.2)	-	383 (5.5)	48 (0.7)	54 (0.8)	624 (9.0)	3,557 (51.4)	257 (3.7)	6,919 (100.0)
1982	494 (8.1)	214 (3.5)	326 (5.3)	681 (11.2)	4 (0.1)	237 (3.9)	54 (0.9)	32 (0.5)	299 (4.9)	2,677 (43.8)	1,089 ^{N.9)} (17.8)	6,107 (100.0)

Source : *Annual Report of the Statistics of Justice*, Ministry of the Justice

Table 12. Comparison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Between the Women in an Instance of Divorce and the Total Married Women

離婚請求女性과 전체 既婚女性 사이의 女性の 經濟活動 參加率의 比較

Activity of women	Our source in 1980		Total population of married women in 1980	
	%	N	%	N
Women doing un professional activity	50.8	2,670	34.7	2,497,338
Women not doing un professional activity	49.2	2,588	65.3	4,699,360
Total	100.0	5,258	100.0	7,196,698

Source : Table 11 and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80, E. P. B.

Table 13. Comparison of the Socio-professional Distribution of Women Who are Engaged in a Procedure of Divorce with the Socio-professional Distribution of the Total Married Women in 1980^{N.7)}

離婚請求 就業女性과 全體 就業女性の 社會職業 分布의 比較, 1980年

(Unit : %)

Socio-professional Category	In instance of divorce	Total population of married women
Prof. & Technical workers, Adm. & Managerial workers, Clerical & Related workers ^{N.8)}	22.3	2.8
Employees	17.2	1.4
Sales workers	24.2	14.5
Service workers	8.3	7.9
Agri., Fishery & Forestry	18.3	65.2
Laborers	9.7	8.2
Total	100.0	100.0

Source : Table 11 and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80.

N. 7) 비경제 활동인구와 실업자는 본 표에서 지적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혼 청구자의 통계에서 비경제 활동인구와 실업자와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N. 8) 수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 사무직과 전문기술직을 함께 묶었다.

Table 14. Comparison Distribution of the Level of Schooling Who are Engaged in the Procedure of Divorce with the Distribution of the Level of Schooling of the Total Population in 1980^{N.9)}

離婚請求者와 總人口의 學歷水準 分布 比較, 1980

(Unit : %)

Level of schooling	In instance of divorce(a)	Total population(b)	Divorce rate(a/b)
Illiterate person	5.7	17.2	33.1
Elementary school	24.4	31.5	77.5
Middle school	31.7	21.7	146.1
High school	28.7	22.5	127.6
College and University	9.5	7.6	125.8
Total	100.0	100.0	

Source : a) Table 15

b)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1980, pp. 118~119, E. P. B.

N. 9) 이 분포에서 학생과 6세미만의 아이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比較에서 보면(表 13 參照), 전문직 및 행정·사무직, 고용직 및 상업종사자에서 더 높은 比率을 보여주고 있다. 反面에 노동에 종사하는 女性の 比率은 離婚訴訟에 관련된 女性이 職業을 가진 既婚女性の 比率보다 약간 더 높았고(9.7%, 8.2%), 농업에 종사한 女性은 매우 낮았다(18.3%, 65.2%).

職業 範疇에 따른 婦人의 離婚率의 比較는 사

무직, 전문직, 행정직 그리고 판매직에서 離婚率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女性の 就業은 經濟的으로나 情緒的으로 夫婦關係를 자율적인 생활로 이르게 하는 再構成을 수반한다. 個別的 收入을 가졌다는 사실은 夫婦에게 있어서 女性の 地位를 분명히 改善시킨다.¹⁵⁾ 그러므로 離婚은 女性の 經濟的 活用으로 인한 性役割의 변화와 역할에 대한 傳統的 態度 사이의 不適應

15) A. Michel, *Activité Professionnelle de la Femme et vie Conjugale*, Paris, CNRS, 1974.

의 결과로서 생길 수 있다. 맞벌이 夫婦에게서 갈등의 대두는 婦人으로 하여금 좀 더 쉽게 離婚을 決心하게 할 수 있다.

5. 教育水準

表14는 中學校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장 높은 離婚率을 보여주고 있다. 全 人口의 教育水準에 따라 비교한 離婚率은 中學校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146.1%). 專門大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離婚訴訟에 관련된 사람들의 比率를 全 人口의 比率와 비교해 보았을 때, 高等學校 교육을 받은 사람들 보다는 약간 낮았다(125.8%, 127.6%).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자세히 分析하기 위해서는 男·女를 각각 분류한 資料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¹⁶⁾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離婚을 좀 더 쉽게 決心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은 夫婦間에 긴장이 생기면 참고 살기 보다는 離婚을 통해서 解決하려는 경향이 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혼을 請求한 女性에 관한 統計的 資料의 부족은 女性의 總數

와 비교한 分析을 어렵게 하고 있다. 12년 동안에 無學의 경우 離婚率의 減少와 高等學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離婚率의 增加 現象은 점차로 教育水準이 높아져 가는 경향과 一致한다.

VII. 結 論

離婚에 관한 社會·人口學的인 분석은 항상 그 母集團과 관련해서 解釋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行하여진 離婚의 人口學的인 분석은 離婚請求者의 數를 단순하게 분류하여 설명한 것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이 글에서는 離婚에 관한 여러 變數들을 총인구 수에 비례해서 분석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統計資料의 한계로 因하여 離婚者의 社會·人口學的인 분석을 좀 더 분명하게 解釋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 中에서도 「法院統計年報」에서는 離婚請求者의 學歷水準을 性別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離婚에 영향을 미치

Table 15. Distribution of Divorces According to the Level of Schooling
學歷水準에 따른 離婚者의 分布

Year	Illiterate pers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 University	Total
1971	540(12.6)	1,334(31.2)	1,019(23.8)	947(22.2)	439(10.2)	4,297(100.0)
1972	631(13.8)	1,367(30.0)	1,056(23.1)	1,027(22.6)	480(10.5)	4,563(100.0)
1973	603(12.2)	1,386(28.1)	1,494(30.3)	979(19.8)	475(9.6)	4,937(100.0)
1974	609(11.4)	1,627(30.4)	1,482(27.7)	1,164(21.8)	469(8.7)	5,351(100.0)
1975	685(11.5)	1,936(32.6)	1,672(28.1)	1,150(19.4)	500(8.4)	5,943(100.0)
1976	454(6.0)	2,011(26.7)	2,322(30.8)	1,954(26.0)	788(10.5)	7,529(100.0)
1977	452(5.8)	2,291(29.4)	2,596(33.3)	1,758(22.5)	701(9.0)	7,798(100.0)
1978	1,014(12.1)	2,176(26.0)	2,463(29.4)	1,964(23.5)	748(9.0)	8,365(100.0)
1979	626(6.1)	2,741(26.6)	3,617(35.1)	2,778(27.0)	529(5.2)	10,291(100.0)
1980	631(5.7)	2,704(24.4)	3,517(31.7)	3,180(28.7)	1,054(9.5)	11,086(100.0)
1981	734(5.5)	3,109(23.5)	4,133(31.3)	3,841(29.0)	1,418(10.7)	13,235(100.0)
1982	877(7.0)	1,837(14.7)	3,292(26.4)	5,053(40.5)	1,414(11.4)	12,473(100.0)

Source : Annual Report of the Statistics of Justice, Ministry of the Justice

16) 그러나 「법원통계연보」에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와는 달리 교육수준에 관해서는 성별로 구분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는 중요한 變數 中の 하나는 教育인데, 이것은 자료의 불충분으로 因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教育的 水準과 더불어 離婚에 영향을 미치는 主 原因은 여성의 就業과 子女의 적은 數이다. 여성의 就業 種類別 離婚請求率을 전체 여성의 職業比率로 나누어 볼 때, 전문직, 중급직, 공무원 및 사무직 종사자의 比率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教育을 받고, 職業을 가진 여성들이 같은 범주에 속하는 전체 여성에 비해서 가장 離婚率이 높다는 것으로 解釋된다. 이와 더불어 子女數의 減少는 역시 離婚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관한 전국적인 통계자료 분석은 離婚에 관한 구체적인 研究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離婚에 관한 社會·人口學的 분석은 “離婚의 原因들”에 관한 統計學的 및 法社會學的 分析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분석해서 連結시킬 것이다.

參 考 文 獻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75, 1980
- 법원행정처: 「법원통계연보」 1971~1982
- 이장성: “우리나라 이혼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혼실태 분석과 제도적 모순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 이태영, 김숙자: 「한국의 이혼율 연구」, 가정법률 상담소, 1981
- 이태영: 「한국의 이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68
- 정요섭: “이조시대에 있어서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 「이조여성연구」, 아세아여성문제 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1976
- 조혜정: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인문과학」, 연세대학교, 1980
- E. Durkheim: “Le Divorce par Consentement Mutuel,” in *Textes, 2, Religion, Morale, Anomie*,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75
- A. Michel: *Activité Professionnelle de la Femme et Vie Conjugale*, Paris, CNRS, 1974
- Lo Roussel: *Le Mariage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Paris, P. U. F., INED, Cahier, No.73, 1975